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

(최재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9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9.

발의의원 : 최재규 의원,

서도원 의원, 이연숙 의원

## 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여,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우선구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## 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(이하 “우선구매 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, 직속기관(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, 농업기술센터), 읍·면, 읍·면 출장소
2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
3.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·출연기관

제5조(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)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

우선구매촉진 계획(이하 “우선구매 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
2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
3.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1.1 이상이 되어야 하며,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**제6조(우선구매 촉진)**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 및 협조)** ① 군수는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.

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, 관계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8조(평가 및 포상)** ①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·단체·법인·개인 등을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□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2024. 2. 6. 일부개정, 2024.

## 8. 7. 시행)

제2조(정의) ① “중증장애인”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(이하 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”이라 한다)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
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

③ “공공기관”이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(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##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본 조례안은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설치·운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7조), 우수 기관·단체·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(안 제8조). 이에 따라 일부 예산 집행이 수반될 수 있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3호)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에 따른 예산 지원 및 포상은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나,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규모·대상·방식 등이 현재 확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- 향후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시 검토·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작성자

소속 및 직위

달성군의회 의원

성명(연락처)

최재규 (☎ 2053)